

무배당 하나원큐연금저축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하나원큐연금저축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1년 03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효성(인)

사업방법서

무배당 하나원큐연금저축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하나원큐연금저축보험

※ 다만, 판매채널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채널인 경우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다.

2. 연금지급개시나이,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내용
연금지급개시나이(Y)	만 55 세 ~ 85 세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납입기간(M) 기본보험료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
5 만원 이상	-	-	만 19 세~(Y-M-8)세
10 만원 이상	만 19 세~(Y-M-5)세	만 19 세~(Y-M-3)세	만 19 세~(Y-M-1)세
15 만원 이상	만 19 세~(Y-M-3)세	만 19 세~(Y-M-2)세	만 19 세~(Y-M)세

3. 연금지급 형태 및 보험기간

구분	내용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100세- 연금지급개시나이(Y))년)보증형 확정연금형: 5년 확정형,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30년 확정형 100세((100세- 연금지급개시나이(Y))년)확정형
보험 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Y)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Y)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Y) 연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5년, 10년, 20년, 30년, (100세-Y)년)까지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약관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계약자가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연금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만 50세 이전 가입시]

연금지급개시나이(Y)	만 55 세~59 세	만 60 세 이상
연금지급기간	(Y)세 계약해당일부터 10, 20, 30, (100세-Y)년	(Y)세 계약해당일부터 5, 10, 20, 30, (100세-Y)년

[만 50세 이후 가입시]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Y)세 계약해당일부터	(Y)세 계약해당일부터

	10, 20, 30, (100 세-Y)년	5, 10, 20, 30, (100 세-Y)년
※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연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4.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정의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나이 - 2 세’ 연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하다.

나. 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

- 5년납 : 월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 7년납 : 월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 10년납이상 : 월 5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2) 추가납입보험료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납입기간)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액
- 적립액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및 장기 납입보너스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하다.

- (3)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 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하며,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으로 한다.

7.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3.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납입해당일에 적립액으로 이체한다.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 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적립액이 ‘라’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 다. ‘나’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기된다.
- 라. ‘나’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다.
- 마. ‘다’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된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 1-2 조(정의) 제 4 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다.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1.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해당액과 1구좌당 200만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 나. 적립액의 인출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인출한 것으로 본다.
- (1)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가)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 (나)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가)’ 외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다) ‘(가)’ 및 ‘(나)’ 외에 납입한 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 (2) 이연퇴직소득
- (3)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제 1 항 제 2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금액
- (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 (나)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다)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

-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적립액 인출 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장래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인출후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관련 세법에 따라 발생가능한 세금 포함)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인출할 수 없다.
- 라. ‘가’ 및 ‘다’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가’의 해지환급금은 적립액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잔여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동안의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나’의 (2) 및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인출 시 적립액에서 차감한다.

12. 의료비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의료비 인출’ 이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확정연금형의 경우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및 연금외수령으로 일시 인출시 기타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 다. 의료비연금계좌는 1 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하거나 일정기간(종신연금형의 경우 의료비 인출로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소진된 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 종료 시점까지) 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확정연금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13.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 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 나.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 (1) 공시기준이율은 연금저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내부지표} \times (1 - \alpha) + \text{외부지표} \times \alpha$$

(2) 내부지표

(가) 내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 (주) 1. I : 산출시점 직전 12 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2. E : 산출시점 직전 12 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3. A_{12} : 산출시점 직전 13 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1 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나)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한다.

(3) 외부지표

(가) 외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 = \text{국고채}(5\text{년})\text{수익률} \times \beta_1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text{수익률} \times \beta_2 + \text{통화안정증권}(1\text{년})\text{수익률} \times \beta_3$$

(주) 국고채 가중치, 회사채 가중치, 통화안정증권 가중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ta_1 : \text{국고채 가중치} = \frac{a}{a+b+c}$$

$$\beta_2 : \text{회사채 가중치} = \frac{b}{a+b+c}$$

$$\beta_3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 \frac{c}{a+b+c}$$

- a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일평잔의 평균)

- b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일평잔의 평균)

- c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일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나) 국고채(5년) 및 회사채(무보증 3년, AA-)와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을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다)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4)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text{내부지표의 가중치}(1 - \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드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드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한다.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단, 외부지표 또는 내부지표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공시이율의 결정상한이 유배당 연금저축 공시이율의 결정하한 이하로 산출되는 등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유배당 연금저축의 공시이율보다

높게 쓸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마.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 바.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14.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나.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다. 계약자는 ‘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라.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20. 계약 이전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5.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적립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16. 보험료납입 일시증지제도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납입의 일시증지(이하 ‘보험료납입 일시증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 증지된 기간(이하 ‘보험료납입 일시증기기간’이라 한다)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가’의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증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증기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증기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납입 일시증기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 다. ‘나’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증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 1-2 조(정의) 제 4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다.
- 라. 보험료납입 일시증기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증기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증기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약관 제 29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한다.
- 마. 보험료납입 일시증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1회 신청당 12개월(최소 3개월)을 최고 한도로 한다. 또한 보험료납입 일시증기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증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하다.
- 바.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증기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증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사.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 종료일 1 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아.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대체보험료를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한다.

17.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른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 중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18.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 (1)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자 적립금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원리금보장형 연금저축 특별 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한다.
- (2)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대상 적립보험료는 영업보험료(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평가한다.

19.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과의 자금이체

- 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납입일이 매월 1 일부터 15 일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당월말까지, 16 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15 일 까지)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매월 1 일부터 15 일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당월말까지, 16 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15 일 까지)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다. '가' 및 '나'에 있어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다음 (1) 또는 (2)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
- 나. 계약자가 ‘가’에 따라 해지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다. ‘가’ 및 ‘나’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 않는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 라.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한다.
- (1) 이전 신청일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 받을 금융회사에서의 거절)
 - (2)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 (4)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6) 계약자 나이가 만 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마. 이미 실효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다.

21. 보험료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이하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단,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22. 장기납입보너스에 관한 사항

- 가. 회사는 10년 이상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향후 기본보험료 납입시(선납시 해당회차 계약응당일)에 납입회차별로 아래 장기납입보너스 해당금액을 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납입회차	장기납입보너스
121회 이상	기본보험료의 0.5%

다만,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가’를 적용한다.

23.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text{Min}(\text{보험료 납입기간}, 10)$

다.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라.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마.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은 온라인채널 전용 상품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채널을 포함한다.
-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의 95%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바.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차감금액(계약관리비용)과 기본보험료의 차감금액(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의 합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아.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서비스에 관한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